

# 시설공사 실정보고 처리 실태 등 특정감사 결과

## □ 감사개요

-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실정보고 처리 실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계획 수립 후 2022년 11월 14일 ~ 21일까지 6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- 감사결과,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상 조치를 하였다.

## □ 감사결과

구 분	계 (건/명)	행정상 조치(건)				신분상 조치(건/명)		
		소계	시정	주의	권고 통보	소계	경징계	훈계
계(건/명)	4/-	4	2	2	-	-	-	-

**시설공사 실정보고 처리 실태 등 특정감사 결과**  
**【처분요구사항】**

# 인천광역시

## 시정·주의 요구

제 목 ○○공사 추진 관련 규정 준수 소홀

기 관 명 인천광역시○○본부

관 계 부 서 ○○부

### [내 용]

인천광역시○○본부(이하 ‘본부’라 한다)에서는 북부지역 신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의 효과적 처리 및 검단신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천 ◇◇와 ◆◆ 연결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 [표1]과 같이 ‘□□ 건설사업’과 ‘■ ■ 건설사업’을 추진 중에 있다.

**【표1】 ○○사업 현황**

사업명	사업비 (백만원)	사업개요	사업기간	비고
□□1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□□2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□□3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□□4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□□5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□□6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■ ■1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■ ■2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■ ■3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■ ■4	***	○ 위 치: △△△ ○ 사업규모: ▲▲▲	20** ~20**	

※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## 1. (교통·재해)영향평가 심의(협의) 결과 이행관리 소홀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2조(교통영향평가의 이행)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(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)에 따라 ‘이행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,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며

또한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)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(이행상황 관리대장)에 따라 ‘협의 내용 이행 상황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본부는 교통영향평가 관리대장(■■■ 건설공사, □□ 건설공사) 및 재해영향평가 관리대장(□□ 건설공사)을 미비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(교통·재해)영향평가 심의(협의) 결과 이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## 2.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준수 소홀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(이하 ‘업무수행지침’이라 함) 제97조(설계변경 관리) 제10항에 따르면 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,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되어 있고, 제12항에 따르면 ‘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,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본부에서는 아래 [표2]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처리하였다.

**[표2] 실정보고 접수 및 지연처리 현황**

사업명	실정보고 내용	건설사업관리단			발주청			비고
		접수일	처리일	소요일수	접수일	처리일	소요일수	
■■■3	▽▽ 변경	**4.15.	**5.31.	30일	**5.31.	**6.3.	3일	
□□4	현장사무실 및 부지임대	**6.17.	**6.20.	1일	**6.21.	**7.13.	16일	

※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또한, 업무수행지침 제97조 제12항에 따르면 ‘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(T/F팀)을 구성(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)·운영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되어 있고, 인천광역시▼▼본부에서는 ‘발주청 기술검토팀 구성·운영 계획(안)[○○부-\*\*\* (20\*\*.9.2.)]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.

그러나 본부에서는 기술검토팀을 구성·운영하지 않는 등 설계변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####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○○본부장은

[시정] ①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(교통·재해)영향평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심의(협의) 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, ②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규정에 따라 발주청 소속직원 으로 기술검토팀(T/F팀)을 구성·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,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(교통·재해)영향평가 관리대장 미비치, 실정보고 지연처리, 기술검토팀 미구성 등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.

# 인천광역시 시정 · 주의 요구

제 목 ◆◆ 건립공사 추진 관련 규정 준수 소홀

기 관 명 인천광역시 ■■구청

관 계 부 서 ○○과

## [내 용]

■■구에서는 ■■동 \*\*\*번지 일대 지하2층, 지상1층, 연면적 7,756.97㎡ 규모의 ◆◆ 건립 신축공사를 추진 중('\*\*년 11월 기준, 공정률 79.48%)에 있다.

### 1. 설계변경 시 예정가격 작성 기준 준수 소홀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제10조(예정가격의 결정기준) 제1항에 따르면 ‘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제3호에서는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,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, 유사한 물품·공사·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’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■■구에서는 ◆◆ 건립공사 내역서 상 누락된 가건물 철거 비용 증액 건1)에 대한 설계변경 시 「지방계약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, 제4호 철거업체 견적가격으로 작성함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미준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1) 기존 조립식 건축물 5개동 철거: \*\*\*원 증액(무허가 건축물 및 도면 부존재)

## 2.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준수 소홀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(이하 ‘업무수행지침’이라 함) 제67조(설계변경 관리) 제8항에 따르면 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, 설계변경도면,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,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그러나 ■■구에서는 ◆◆ 동절기(20\*\*년 12월 ~ 20\*\*년 2월) 공사 진행에 대하여 발주청·시공자·감리자와 공사관계자 회의를 개최(20\*\*.12.27.)하였으며, 당시 회의에서 【표】와 같이 동절기 공사에 대해 합의 및 콘크리트 보양비 등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동절기 작업을 실시하였다. 그리고 시공자 및 감리자는 동절기 공사가 끝난 이후 동절기 보양비 등에 대해 실정보고<sup>2)</sup>를 제출하였고(20\*\*. 4. 28) ■■구에서는 실정보고를 승인(20\*\*. 5. 4.)해주었다.

그 결과 ■■구에서는 동절기 공사 회의 시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사항임에도 사전 실정보고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동절기 작업을 지시 하는 등 「업무수행지침」 제67조(설계변경 관리)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】 동절기 공사 회의록

구 분	내 용		비 고
제 목	◆◆ 건립공사 동절기 공사		
일 시	20**. 12. 27. (*). 14시		
참석자	시공자	●●건설(주) ***, ***, ***	
	감리자	△△총괄감리원 ***	
	발주청	■■구 ○○과 ***, ***	
회의내용	○ 문제점 1) 현장집입로 도로개설공사와 ◆◆ 공사 간섭 발생(20**년 2월 pss 거더 설치시 중량물 차량이동 필요) 2) 경비 비용의 발생: 보양비(인건비, 열풍기, 경비 등의 발생) → 보양비 발생시 처리방안 협의 3) 철근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○ 결론: 동절기 공사 진행(품질확보), 동절기 공사비는 ■■구에서 사례검토 확인		

■ 자료근거: 관련부서 제출자료 재구성

2) 동절기 보양비에 대한 실정보고 승인 금액: 증 \*\*\*원

또한, 「업무수행지침」 제67조 제11항에 따르면 ‘발주청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(T/F팀)을 구성(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)·운영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고, 인천광역시▼▼본부에서는 ‘발주청 기술검토팀 구성·운영 계획(안)[●●부-\*\*\* (20\*\* .9.2.)]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.

그러나 ■■구에서는 기술검토팀을 구성·운영하지 않는 등 설계변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      ■■구청장은**

**[시정]**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규정에 따라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(T/F팀)을 구성·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
**[주의]**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